

산업경영종합연구소규정

(제정 1985.11.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산업경영종합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 및 경영에 관한 연구조사, 산학협동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경영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문활동
2. 기업 경영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문활동
3. 국제통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문활동
4.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문활동
5. 원가계산, 원가관리 및 세무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문활동
6. 경제 및 경영활동에 관련된 통계처리 조사연구 및 자문활동
7. 교수연구세미나, 경제·경영 포럼 개최 및 간행물 발간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 1인
2. 간 사 : 2인 이내
3. 감 사 : 3인 이내
4. 연구요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연구보조원) : 약간명
5. 연구조교 : 약간명
6. 운영위원 : 7인 이상 10인 이내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감사) ① 연구소 간사 및 감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총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요원, 연구지원인력 및 운영분과) ① 연구요원은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 연구보조원을 지칭한다.

② 연구요원은 연구소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전임연구원과 학부에 소속되어 부분적으로 연구소 운영에 참여하는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교수와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박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교·내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결격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전임연구원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3. 전임연구원은 계약제로 임명하며(연구소교수는 3년, 박사후 연구소는 1년), 연구소교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충족해야 하는 ‘의무 연구업적량’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전임연구원에 관한 기타의 규정은 “부설연구소설치규정”에 따른다.

④ 비전임연구원(정회원)은 연구소에 소속, 부분적으로 연구소 운영에 참여하는 본교전임교원을 말한다.

⑤ 특별연구원은 연구활동 및 용역수행 등 연구소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박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조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학생 이상으로 소장이 과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연구기간 동안 임용한다.

⑦ 연구지원인력은 소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⑧ 연구지원인력에 관한 기타의 규정은 “부설연구소설치규정”에 따른다.

⑨ 운영위원회 내에 사업성격에 따라 교수연구분과, 산학협동분과, 산경포럼분과, 신규사업 개시 분과 등 5개 이내의 운영분과를 둘 수 있다.

⑩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전문연구소) 전문연구소의 설치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신청으로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선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①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분과장 및 부장을 포함한 7~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소의 승인에 관한 업무
6. 감사 선출
7. 교원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 경비는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하되 연구소를 통한 모든 연구 용역비의 3%를 연구소 운영경비로 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구원의 외부용역 수입 중 10%는 본교 연구간접경비, 10%는 연구소 간접경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특별연구소 연구비로 지급한다.

제 5 장 감 사

제15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년도 종료 직후 1월내에 해당 연구소의 예산집행, 기자재구매, 사업 진행내용 등 연구소가 1년 동안 수행한 제반 업무에 대해 조사·평가를 한다.

③ 감사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한다. <개정 2019.9.1.>

⑤ 감사는 임무 완수와 동시에 그 기능이 정지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9일 제정한 「전주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5-3-4-4 산업경영총합연구소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